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37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이원택・한병도・이규민

조승래 • 김두관 • 맹성규

양정숙 • 신정훈 • 홍성국

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관련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에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는 관련조세특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

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을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을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 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을 "제

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	대한 세액감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한다.	
1.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산	1. 2024년 12월 31일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	
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중	2. <u>2024년 12월 31일</u>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	
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	
기업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	663	돈(양	형농	조현	합법	인		등어		대	한
	법인	l 세	의	면	제	등	.)	1	Γ	농	어
	업경	형 영	체	육	성	및	지	원	케	관	한
	법퇕	<u> </u>	에	u	구른		영.	농조	'합	법	인
	(0)	하	" o	녕농	·조·	합병	빌인]"0]라		한
	다)	에	대히	ll 스	는	20)21	년	12	월	3
	<u>1일</u>	0]	전여	케	끝니	}는	- 3	과서	[연	도	까
	지	곡딅	물 및	킺	기 [1	식	량진	물	재	배
	업이	ll 서		발	생ㅎ	누는		소	득(0]	하
	"식	량진	나물	재1	배업	소	득	"o]	라		한
	다)	٢] 액	과	식	량	작-	물지	배	업	소
	득	외의	의 :	소득	= =	ろり	대-	통령	령	<u>0</u>	로
	정ㅎ	누는	받	님위	의	급	- 액	에	대	하	여
	법인]세	를	면.	제한	ŀ디					
	2	영	농	조합	합법	인.	의	3	'합	원	(٥
	여 느	ニス	하별	ήο) 0	근]	早 F	:]	20	21	녀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u>2024년 12월 31</u>
<u>일</u>
②
<u>2024년 1</u>
<u> 2월 31일</u>
·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

③
<u>20</u>
24년 12월 31일
4
<u>2024년 12월 31일</u>

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 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u>2021년 12월 31일</u>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 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2024년 12월 31일</u>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 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8 ~ (10)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 ①
<u>2024년 12월 31일</u> -

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 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 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②
2024년 12월 31일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 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 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 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 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

③
2024년 12월 31일
4
<u>2024년 12월 31일</u>
,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⑥ (생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 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 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17/1/시계 6시 11년 6/10
2024년 12월 31일
· 1.•2. (현행과 같음)
1. 4.(记6可 在日/

- ② ~ ② (생 략) 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②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2. (생략)
 -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 세문서에만 적용

4. • 5. (생략)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 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제11호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4. • 5. (현행과 같음)